

의안번호	2216017
의 퇴 인	김남근 의원
회 답 일	2026. 2. 23.
추계번호	26A0214

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, 패션봉제산업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7년 4억 9,000만원, 2031년 2억 1,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6억 3,400만원(연평균 3억 2,7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(안 제5조)	272	—	—	272	—	544	109
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(안 제6조)	218	218	218	218	218	1,090	218
합 계	490	218	218	490	218	1,634	327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종합계획 등의 수립·시행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패션봉제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함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함	의무규정
3	안 제7조(패션봉제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패션봉제산업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결과를 기초로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8조(전문인력 양성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조(기술의 전수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 － 1. 패션봉제산업 관련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－ 2.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패션봉제산업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－ 3.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－ 4.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0조(창업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 교육·상담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1조(시설·유통의 현대화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사업체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2조(공동사업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사업자가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음 - 1.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- 2. 공동작업장·공용재단실 등 공동생산시설의 설치·운영 - 3. 구매·물류·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구축 - 4. 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 및 홍보 - 5.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- 6. 원단폐기물 공동 처리 - 7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사업	재량규정
9	안 제13조(판로 확대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시·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, 온라인 유통플랫폼 연계 및 공공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4조(금융 및 세제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감면, 금융 지원 등 필요한 금융·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종합계획 등의 수립·시행)	○	—
2	안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	○	—
3	안 제7조(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중소기업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패션분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조 인프라 고도화 지원, 작업장 내 환경개선 지원, 공정 디지털스마트화 등을 위한 장비(H/W) 및 소프트웨어(S/W) 임차비 등 지원,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4	안 제8조(전문인력 양성 지원)	X	
5	안 제9조(기술의 전수 지원)	X	
6	안 제10조(창업 지원)	X	
7	안 제11조(시설·유통의 현대화 지원)	X	
8	안 제12조(공동사업 지원)	X	
9	안 제13조(판로 확대 지원)	X	
10	안 제14조(금융 및 세제지원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부는 다수의 패션봉제산업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①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(안 제5조), ②패션봉제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(안 제6조)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패션봉제산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세부사업명-내(내)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사업 내용	2026년 예산
안 제6조 (실태조사 및 통계 작 성·관리)	소공인특화지원-지역소공인육성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8)	· (실태조사) 업종별·지역별 소공인 경영실태 및 현황을 종합적 조사하여 소공인 정책방향, 추진 과제 등의 기초자료 제공	400
안 제11조 (시설·유통 의 현대화 지원), 안 제12조 (공동사업 지원)	소공인특화지원-지역소공인육성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8)	· (복합지원센터)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제 조인프라를 고도화하여, 집적지 활성화 및 지역 내 소공인 맞춤형 지원 · (특화지원센터) 소공인 집적지(구) 내 지원센터에 서 교육·상담, 특화 프로그램 운영, 인프라 지원 등으로 소공인 성장 발전 촉진	1,900
	소공인특화지원-클린제조환경조성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8)	· (클린제조환경조성)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 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개선 등 환경개선 지원	200
	소공인특화지원-스마트제조지원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8)	· (스마트제조지원) 소공인의 공정 디지털화·스마 트화 등을 위해 장비(H/W) 임차비, 부품 재료 비, 소프트웨어(S/W) 임차비 등 지원	6,500
안 제13조 (판로 확대 지원)	소공인특화지원-판로개척지원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8)	· (판로개척지원)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 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	700

주: 패션봉제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재정사업은 없으며, 소상공인특화지원사업을 통해 패션봉제분야 소
상공인에 지원되는 재정사업을 별도로 작성한 것임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
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
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종합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 해인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,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2027년에 2억 7,200만원, 2030년에 2억 7,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중소벤처기업부는 “도시형 소공인 지원 3차(2025~2027) 종합계획 수립”을 위해 2024년에 2억 7,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
- 제정안에 따라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억 4,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하여,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

[표 2]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(안 제5조)	272	—	—	272	—	544	1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패션봉제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관리·작성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라 추가재정

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는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2억 1,800만원으로 추계됨
 - － 중소벤처기업부는 “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분석(2025년)”에 3억 8,600만원, “소상공인 실태조사(2024년)”에 5,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
- 제정안에 따라 패션봉제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0억 9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패션봉제산업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(안 제6조)	218	218	218	218	218	1,090	2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